

(앞쪽)

봉 함 엽 서	
보내는 사람 시·도경찰청장(경찰서장) 주 소 □ □ □ □ □	우체국 요금후납
과태료 부과 고지서 재중	받는 사람 귀하 □ □ □ □ □

..... 집 는 선

..... 제 호 집 는 선

과태료 부과 고지서 및 영수증(납부자용)

납부자:	생년월일:	세입징수관	계좌번호
주 소:			

귀하에 대하여 「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」 제2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과태료를 부과하니,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.

과태료 금액		납부기한	~
위반 일 시		위반내용	
사항 장 소		적용법령	

년 월 일

위 금액을 정히 영수합니다.

* 납기 후 수납 불가

시·도경찰청장
경 찰 서 장

직인

수납인

접는선

제 호

과태료 부과 고지서 및 영수증(수납기관용)

경찰청

납부자 : 생년월일:
주 소 :

세입징수관	계좌번호

과태료 금액		납부기한	~
--------	--	------	---

위 금액의 수납을 의뢰합니다.

년 월 일 은행(우체국) 지점

시·도경찰청장
경찰서장

직인

수납인

접는선

< 안내 말씀 >

- ❖ 앞쪽에 적힌 과태료 금액을 한국은행 국고(수납) 대리점인 은행, 우체국, 신용협동조합, 새마을금고 또는 상호저축은행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.
- ❖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실 경우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우리 경찰서(시·도경찰청)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하실 수 있습니다.
- ❖ 이의제기 없이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으실 경우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 제24조에 따라 5/100의 가산금이 부과되며, 매 1개월 경과 시마다 12/1000의 증가산금이 부과됩니다. 아울러 같은 법 제52조에 따라 관허사업의 제한을 받을 수 있고, 같은 법 제53조에 따라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가 신용정보기관에 제공될 수 있으며, 같은 법 제54조에 따라 법원의 결정으로 감치(監置)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.
- ❖ 영수증은 5년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.